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1 선고 2024가단5441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22. 11. 7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D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2. 11. 9. 접수 제142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판결)

판사박상수

별지